

부산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3010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10. 11. 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D 주식회사는 2018. 3. 29.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22. 10. 10., 이율 및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회사는 2021. 12. 21.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 8. 17.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소262921호, 공시송달).

C의 어머니인 E는 2021. 10. 24.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C 외에 F, G, 그리고 피고가 있었다. E의 상속인들은 2022. 10. 11. E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부 피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 명의 등기를 마쳤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무자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여부

피고는 H이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를 H에 대한 채권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계속 중 서증 송달의 방법으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H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대출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전제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C에게 혹은 C의 요청에 따라 상당한 돈을 빌려주는 등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C을 위하여 피고 주장의 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H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별지